

‘20.10.1.부터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행 안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상시단속 아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로 등록된 차량은 2021.6.30.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 이오니 아래의 단속유예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50 μ g/m ³ 초과)로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 시행 전날 17시 이후 예보 문자(휴대폰 긴급재난문자), 시홈페이지, 언론 등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운행제한 SMS서비스' 신청 가능
운행제한 단속시간	- 시행당일 06:00 ~ 21:00 까지 운행제한 /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및 과태료	- 시내 주요지점 도로에서 5등급 전용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실시 - 단속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됨)
운행제한 대상차량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기준에 5등급으로 분류되는 차량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
운행제한 제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 지역별로 상이함 -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등급)가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 등 국가의 특수공용목적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등의 공용자동차로 외교부장관 확인받은 차량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태양광·하이브리드)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
단속유예 신청방법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저공해조치 신청된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불가(미개발 포함)로 등록된 차량은 2021.6.30.까지 단속 유예함 ※ 저공해조치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신청 ※ 장착불가차량 신청 : 저감장치 제조회사에 장착불가 등록 요청→대전시 통보
문 의 처	- 대전시 콜센터(☎ 042-120), 미세먼지대응과(☎ 042-270-5461~4)

제한 구분	시행지역	시행시간	제한대상	과태료	관련법령
LEZ (수도권제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매 일 (24시간)	5등급중 (60일이상 진입 사업용자동차)	20만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녹색교통 진출지역	서울시 중심부 (종로구, 중구일부)	매 일 (06~21시)	5등급	10만원	지속가능교통 물류발전법
계절관리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12~3월 (휴일제외 06~21시)	5등급	1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상저감조치	전 국	발령시 (휴일제외 06~21시)	5등급	1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역별 콜센터 문의처 : 서울시(02-120), 경기도(031-120), 인천시(032-120)

※ 5등급차량 지원사업(조기폐차지원, 매년저감장치 지원)은 2021. 2월경 공고(시청 홈페이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장